

#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운영회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8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  
발 의 자: 운영회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은림, 이종태, 이효원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6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의료 취약계층 및 아동과 모성, 정신질환,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,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.
- 2022년 기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12곳의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15%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, 일부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.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한때 입원 병동이 폐쇄되거나 병상가동률이 24%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.

- 이에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‘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’ 및 ‘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자 함.
- 아울러,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인력, 병상,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‘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’ 및 ‘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’를 추가함(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
- 나.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‘인력, 병상, 시설 등’을 명시함(안 제7조제2항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바목 중 “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”를 “제12조에 따른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,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보건의료자원의”을 “인력, 병상,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”이란 <u>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「<u>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</u></p> <p>사. ~ 자. (생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----- ----- <u>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</u></p> <p>사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 략)

제4조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)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)

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2. (생 략)

3.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

4. (생 략)

③ (생 략)

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삭 제>

제7조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, 병상, 시설 등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
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